

## 의료자문 관련 설명 및 동의서

※ 본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·심사·지급 관련 서비스 업무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피보험자 또는 피해자	성명	강완규	생년월일	680310
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--	--------

상기 본인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(이하 “보험회사”라 합니다)가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에 활용하고자 의료법 제77조의 전문의에게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것을 동의하며, 보험회사로부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### 1. 의료자문 의뢰 사유

- |  |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치의(담당의사) 소견 거부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청구내용 불일치(의학적 증거가 청구내용과 상이)      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의학적 재검토 필요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의학적 근거 미비(의학적 정보 부족)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 의학 정보 필요(고도의 의학 전문 분야)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 및 당사의 동의 |

### 2. 의료자문 의뢰 내용

-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반적 상태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과관계 및 관여도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 치료 내용 및 기간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율 및 장애기간 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진단 적정성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        |

입원 적정성

### 3. 의료자문 의뢰 시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

- |  |   |
|--|---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진단서 / 소견서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진료기록 / 간호기록 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검사기록(영상포함)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                    |

#### < 추가 안내 사항 >

- ◇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, 본 동의서에 따라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의료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의견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.(단,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의료자문 의사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)
- ◇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본 동의에 의해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 등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합니다.
- ◇ 보험계약자 등이 의료자문 결과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 규정한 종합병원의 소속 전문의 중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실시할 제3의료기관 자문의를 보험회사와 함께 정하고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.

26년 3월 19일

동의 및 확인자	강완규 7 동서영재	생년월일	680310
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	본인	전화번호	010-5199-7746

※ 동의 및 확인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는 의료자문의 목적에 한하여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(단,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)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동의자는 정보수집 및 이용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보험금 청구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(위 보유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“①보험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(상법 제662조), 채권·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”을 말합니다.)

동의 함     동의 안 함

##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귀중

☞ 본 문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,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회사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.